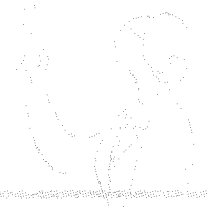

석면함유탈크 사용사업장 점검 실시

노동부는 석면함유탈크 사용사업장에 대한 점검 실시 등 “석면함유탈크 취급공정 근로자 보호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대책은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 이전이라도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가 시급한 사업장에 대하여 추진된다.

식약청에서 석면함유탈크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 133개소에 대한 점검을 우선 실시하고 (4-5월), 향후 총리실의 “위해물질관리 T/F”를 통하여 석면함유탈크 수입업체와 공급선을 파악하여 추가로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 결과, 석면함유 탈크를 사용하는 경우, 즉시 사용 중지 조치하고 불이행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취급공정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취급공정 종사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석면함유제품 제조·가공 업무에 장기간(1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의 경우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점검결과, 파악된 정보 중 지경부·환경부·식약청 등 “위해물질관리 T/F” 참여부처 관련사항은 필요시 통보하여 생활용품 등의 안전성 확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진폐재해자에 대한 보상을 연금으로 개편

- 제도개선에 따라 1만 명 이상의 진폐재해자가 매달 월 48만원 정도의 연금혜택을 받을 전망

노동부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진폐재해자)에 대해서는 그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보상하던 것을 모두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개정안을 4월 13일 입법 예고했다.

〈제도개선 방향〉

- 생애기간 중에는 진폐재해자에게 진폐보상연금을, 진폐로 사망 시는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는 보상체계 마련
- 노동부는 진폐에 걸린 것으로 판정받은 근로자(진폐재해자)에 대해 생애기간 중에는 진폐보상 연금을 지급하고, 진폐로 사망 시는 그 유족에게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
- 진폐재해자 생애기간에 지급하는 진폐보상연금은 기초연금과 진폐장해연금으로 구성됨
- 기초연금은 모든 진폐재해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진폐재해자들이 대부분 고령으로 근로를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의 50%('09년 48.7만원/월)를 지급
- 진폐장해연금은 진폐재해자의 장해수준을 반영하여 차등지급 하되, 진폐 장해 등급간 장해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과거 7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함

또한, 진폐보상연금을 받던 진폐재해자가 진폐로 사망할 경우에는 유족에게 생전 진폐재해자가 받던 진폐보상연금과 동일한 금액의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함

- 그 외 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와 유족은 산재보험금 외에 진폐위로금을 받고 있는데, 기존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을 통합하여 진폐보상위로금으로 진폐재해자 생전에 일시금으로 받게 됨

다만, 현재 요양중인 진폐재해자에 대해서는 기존 산재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또한 장해·유족연금 수급자도 기존 산재보험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기득권을 보장할 계획임

- 재가(비요양) 진폐재해자에 대해 생활을 보장하고, 아울러 진폐재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요양·재활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